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420호(號) 1928(昭和 3)년 5월 25일 금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91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327호(號)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소관철도(南滿洲鐵道株式會社所管鐵道),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, 조선(朝鮮) 내(內) 사설철도(私設鐵道) 화물연락운송규칙(貨物連絡運送規則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8(昭和 3)년 5월25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제8조(條)제2항(項) 중(中) 조선국유철도소속(朝鮮國有鐵道所屬) 표기하중(標記荷重)의 아래[下]「26톤(噸·ton)」을「30톤(噸·ton)」으로, 금강산철도(金剛山鐵道)에서는 동(同) 철도소속의 아래[下]「하중(荷重) 26톤(噸·ton)」을「표기하중(標記荷重) 30톤(噸·ton)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제9조(條) 중(中) 조선국유철도소속(朝鮮國有鐵道所屬) 표기하중(標記荷重)의 아래[下]「26톤(噸·ton)」을「30톤(噸·ton)」으로, 화차(貨車)를 사용한 것으로의 아래[下]「어떤 화차(貨車)에도」를「남만주철도소속南滿洲鐵道所屬) 표기(標記) 33미국톤[米噸]의 화차(貨車)에는」으로 개정(改正)함.